

**2024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**

2024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8일

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

**< 2024년도 보건의료R&D 정책방향 >**

**“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.0 시대 구현”**

- ①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, ② 100일 내 백신·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, ③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(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, '23.4)

**2024년도 전략목표**

**보건의료 R&D 임무 지향성 강화,  
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연구기반 조성**

**4대 전략별  
중점 추진방향**

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	① 필수의료 정책지원 및 주요 질환 진단·치료를 위한 혁신기술 확보 ② 정신건강 증진, 건강약자 지원 등 국민 중심 연구 강화
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보건안보 강화	③ 미래 감염병 대응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
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	④ 데이터·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⑤ 원천기술 기반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⑥ 신약·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 경쟁력 강화
혁신을 촉진하는 R&D 생태계	⑦ 산·학·연·병 연구협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확대

# I. 통합공고 개요

※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(RFP)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 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,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.

RFP 번호	세부 사업명	공고단위 (RFP명)		지원규모	지원기간	과제구성 요건 (아래 참고)	선정예정 과제수
1-1	뇌신경계질환 임상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	뇌신경계질환 임상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 (수요기반형)	뇌졸중	3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50백만원)	4년(2+2) 이내 * 1차년도 6개월	②, ④	1
			파킨슨				1
			뇌전증				1
2-1	유전자전달체 국내개발 가속화사업	바이러스성 전달체 개발	개량형	1,1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550백만원)	4년(2+2) 이내 * 1차년도 6개월	①*, ②, ④	5
			혁신형	7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350백만원)	4년(2+2) 이내 * 1차년도 6개월	①, ②, ④	2
2-2	유전자전달체 국내개발 가속화사업	비바이러스성 전달체 개발	개량형	85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425백만원)	4년(2+2) 이내 * 1차년도 6개월	①*, ②, ④	2
			혁신형	5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250백만원)	4년(2+2) 이내 * 1차년도 6개월	①, ②, ④	3
3-1	전자약기술개발	스마트전자약사업화 종합지원센터		2,0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,000백만원)	3년(2+1) 이내 * 1차년도 6개월	①**, ②, ④	1
4-1	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	지역사회 기반 로봇·시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중재 플랫폼 개발		2,4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,200백만원)	4년(2+2) 이내 * 1차년도 6개월	②, ④	1

\* RFP에 따라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단독 신청 가능

\*\* RFP에 따라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단독 신청 가능

※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

- ① (주관)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
- ② (주관+공동)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
- ③ (주관+공동, 주관+공동)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
- ④ (복수 주관 불가)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

	① 주관	② 주관+공동	③주관+공동, 주관+공동	④ 복수 주관 불가
과제 구성 요건 (예시)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주관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OO대 / A교수</span>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주관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OO대 / A교수</span>                      공동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△△대 / B교수</span>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주관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OO대 / A교수</span>                      공동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△△대 / B교수</span> </div> <hr/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주관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OO대 / C교수</span>                      공동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△△대 / D교수</span>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주관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OO대 / A교수</span>                      공동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<del>△△대 / B교수</del></span> </div> <hr/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주관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<del>OO대 / C교수</del></span>                      공동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△△대 / D교수</span> </div>

※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·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(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(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))

※ 지원분야·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, 접수 경쟁률,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

## II. 신청요건

### 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※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(RFP)별로 확인 필요

※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

※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
**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**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(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)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### □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

※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함

·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
□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

<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(3책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>

구분	연구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
주관연구개발과제(기관)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자
공동연구개발과제(기관)	참여연구자	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

·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
- 최종 과제제안요구서(RFP)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‘RFP 기획 보안서약서’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·공동 연구책임자로 신청 제한

### Ⅲ. 신청 방법

#### □ 공고 및 접수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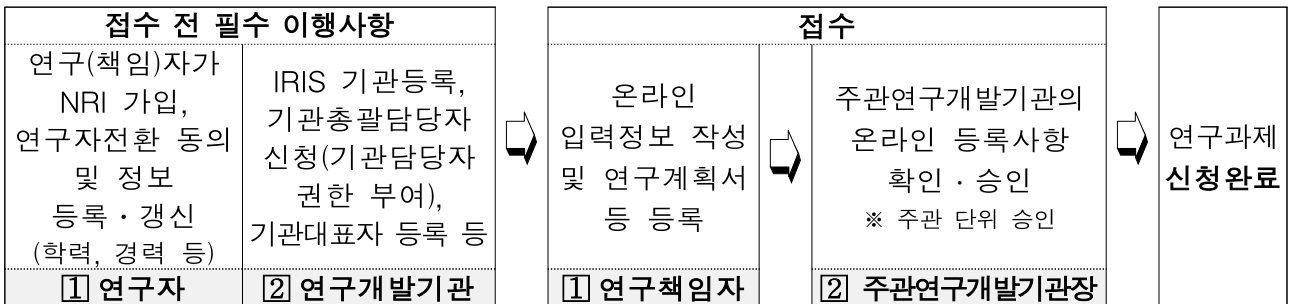
※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▶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\*(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
- \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(공고)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 사업공고  
           ②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) 사업공고
- (접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에 접속하여 신청

#### □ 신청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 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정보 등록 필수

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\*\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- 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-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## □ 공고 및 접수기한

- 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,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

공고대상	연구책임자 과제신청기간(전산입력)*	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기간**
2024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	2024. 5. 8.(수) 14 : 00	2024. 5. 8.(수) 14 : 00

\* 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함

\*\*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(단,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)

※ 전산입력(접수)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대상에서 제외됨

※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(마감 2일전부터)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

#### 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

※ 상세내용은 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 → 자료실 → 법규/서식에서 확인 가능

※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

#### V. 기 타

##### □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○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2024.2.29. 개정)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
○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연구개발기관 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
	정부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
비영리기관	100% 이하	-	-
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
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	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
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$= \frac{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{(\text{해당 연구개발기관})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 \times 100$		

※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


## 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
 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’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  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 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에서 심의

## □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 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
## □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
-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‘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’의 담당 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·기탁하여야 함

## 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※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

## VI. 문의처

### □ 사업공고 열람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)

### □ 사업별 담당자 안내

- 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 관련
 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1877-2041
  - ※ IRIS 콜센터 운영시간 : 09:00 ~ 18:00
- 공고단위(RFP)별 담당자 안내 (2024년 4월 중)
  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)에 별도 공지 예정